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5.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 신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5.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5.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5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조문상)

현행법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법 제250조제1항)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동조 제2항)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그 형사처벌의 정도나 내용을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위헌론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는 첫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

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임.

특히,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표현에서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상(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 중 “행위”는 삭제하려는 것임.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목적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허위사실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상(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 중 “행위”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적 법해석 방지와 선거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할 필요성,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5.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있으나, 현행법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문도 있어 관련된 조문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 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 다), 후보자의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u>출생지·가족관계</u> <u>·신분·직업·경</u> <u>력등·재산·행위</u> <u>·소속단체</u> ,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 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 실한 사실로서 공 공의 이익에 관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현행 과 같음)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 ----- ----- ----- ----- ----- <u>출생지·가족관계</u> <u>·신분·직업·경</u> <u>력등·재산·소속</u> <u>단체</u> , ----- ----- ----- ----- ----- ----- ----- -----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 기) ① 누구든지 후 보자 또는 예비후 보자의 <u>출생지·가 족관계·신분·직 업·경력등·재산 ·행위·소속단체</u>,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 짓임을 이유로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를 거쳐 직 근 상급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 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 ④ (현행과 같 음)	----- -----.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 기) ① ----- ----- ----- <u>출생지·가 족관계·신분·직 업·경력등·재산 ·소속단체</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 음)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250조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u>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u>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 ----- ----- ----- -----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소속단체, ----- ----- ----- ----- ----- ----- ----- ----- -----.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u>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u>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소속단체, ----- ----- ----- -----

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
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
・放送・新聞・通信・雜誌・壁
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
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
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
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
재한 宣傳文書を 配布할 目的
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소속단체-----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